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05.12.20(화)10:00

#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② 거창군 체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③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 ④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11. 21
- 라. 의안번호 : 제2005 - 73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안 제출 이유

○ 예산제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공무원정원을 673명에서 677명으로 4명을 증원함.
- 부칙 제2조 한시정원 규정을 종전 4명에서 8명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3명은 2006.12.31까지, 3명은 2007.6.30까지, 2명은 2007.12.31까지로 각각 조정함.
- 별지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함.
  - 본청의 정원을 527명에서 531명으로 4명을 증원
    - 6급 1명, 7급 1명, 8.9급 각 1명 증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조례안은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행정 도입을 위하여 도의 정원승인 범위내에서 한시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원 증원과 관련 2005.11.1일 주례회의 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회 증원되는 정원은 한시정원으로 행정과내 균형발전담당 2명, 재무과내 복식부기 담당 3명, 기획감사실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방침대로 증원할 경우 과도한 인력이 증원되므로 균형발전 담당은 기존인력에서 보강기로 하고, 복식부기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감원하며, 사업별 예산제도는 2명을 그대로 하여 당초 보고한 정원보다 3명을 감축하여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음.

○금회 한시정원 4명의 한시기간은 복식부기 2명은 2007.6.30까지로, 사업별 예산 2명은 2007. 12. 31까지로 되어 있음.

○ 정원증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5.10.20일자 입법예고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경비 소요예산액은 158,028천원인 것으로 되어 있음.

### 5.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한시정원 보강지침 통보
  - 사업별 예산제도 : 경상남도 행정과-10178(05.9.21)

- 복식부기 확산보급 : “ -10611(05.10.4)

## 6. 참고자료

### 1) 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7 (673)	262 (258)	14	134	61	73	64	45	158	
정 무 직	1	1								
일반직	소계	531 (527)	216 (212)	8	78	23	55	42	40	147
	4급	2	1	0	1	1	0	0	0	0
	4~5급	2	1	0	1	0	1	0	0	0
	5급	31	11	3	2	1	1	3	1	11
	6급	143 (142)	63 (62)	3	10	5	5	11	12	44
	7급	164 (163)	79 (78)	2	25	10	15	13	12	33
	8급	127 (126)	49 (48)	0	35	5	30	9	10	24
	9급	62 (61)	12 (11)	0	4	1	3	6	5	35
별정직	소계	17	1	0	16	0	16	0	0	0
	6급	1	1	0	0		0	0		
	6~7급	16	0	0	16		16	0		
연구사	4	1	0	2	2		1			
지도직	소계	32	0	0	32	32	0	0	0	0
	지도관	2	0	0	2	2				
	지도사	30	0	0	30	30				
기능직	소계	92	43	6	6	4	2	21	5	11
	6급	3	1	0	1	0	1	1	0	0
	7급	9	3	1	2	1	1	3	0	0
	8급	14	2	2	0	0	0	3	1	6
	9급	28	18	1	1	1	0	6	1	1
	10급	38	19	2	2	2	0	8	3	4

## ②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11. 21
- 라. 의안번호 : 제2005 - 44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수수료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지침의 개정에 따른 대처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여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원가이하의 수수료는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고엽제후휴의 증환자, 광주민주화유공자, 장애인을 추가함(안 제7조 제5호~9호)
- 별표1의 일부 기준요액중 인감, 신상, 사실확인, 지방세, 부동산, 축사, 건설등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증액하거나 신설함(안 제2조제3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조례안은 각종 수수료와 관련된 법규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 일부 원가이하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현실화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

○ 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반환을 불반환으로 변경한 것은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로 하는 것이므로 소인한 것에 대하여는 반환이 불가하여 불반환 한 것이며, 제7조의 제5항~제9항까지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신설한 것은 상위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별표 1의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은 인감증명법 제19조에 규정(인감증명 발급신청 및 개인신고 각 600원)된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2.신상에 관한 사항과 3.사실 및 실적에 관한사항 중 일부 삭제하려는 것은 민원발급 대상에서 용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임.

○ 별표 3의 (7) 소유사실 확인, 4.지방세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에 관한 사항중 (1)개별공시지가 확인, 11. 건설 등에 관한 사항중 (1)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건은 수수료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자체 원가계산에 의거 원가계산 범위내에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됨.

○ 기타 신설되는 민원의 수수료는 관련법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적시된 사항이나 거창군의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임.

○ 동 개정조례안중 상향조정되거나 신설되는 일부 수수료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 경우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입법예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2005.11.4 경남신문 외 3개 지역일간지에 예고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외 16개 관련 법률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제15820호

### ③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11.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5. 11. 21
- 라. 의안번호 : 제2005 - 77호

####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제정이유

○ 거창군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지원내용은 둘째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영유아 무료접종, 임부에 대한 철분제와 출생아에 대한 용품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6조)

○ 지원대상은 출생의 경우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영유아와 임부의 경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제한함(안 제4조)

○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장려금 신청은 읍면장에게 지원여부 결정은 군수가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젊은 층의 역외 유출로 인하여 지역인구가 격감하고 있어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3조의 지원내용이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임부의 영양제 및 출산용품지원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육아경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안 제4조의 지원대상자 범위도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현재 부모가 1년 전부터 거주한 자로 제한 것은 지나치게 긴 것으로 실제 거창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려는 자도 지원혜택에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안 제5조의 지원규모의 조항은 동 조례의 가장 중요사항인 것으로 출생장려금 지원규모를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서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는 조례내용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지원내용이 출산부분 한정으로 실제적인 지원대책에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 위하여는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보육경비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및 입양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조례안 제출일 현재까지 규칙안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집행부의 지

원규모는 둘째는 30만원, 셋째이후는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05.11 현재 출산이 둘째아는 146명, 셋째는 55명으로 연간 200명 이상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할 경우(부결 또는 심의보류) 출산장려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선심성 정책으로 분류되어 선거기간동안 대상주민의 혜택이 제한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사항만 우선 조례로 의결한 후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를 거쳐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 5.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④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5. 11. 2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11. 21

다. 의안번호 : 제2005 - 78호

###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제정이유

○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의 자료수집, 보존, 열람, 대출, 부속시설 이용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자료실의 열람시간은 09:00~18:00, 자유열람실은 09:00~23:00, 휴관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매주 월요일로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자료대출, 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회수불능도서 처리 기증자료 등 자료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 부속시설인 시청각실은 1회 3시간기준 50,000원으로, 다목적실은 30,000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냉난방실 이용과 초과시에 별도 가산토록 규정함(안 제12조)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는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제정과 관련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에 의거 입법 예고한 것으로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1조의 사용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도서관의 부속시설인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은 주간보다 야간에 이용하는 군민이 많을 것이므로 22:0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를 보면 시청각실(3층 44평)에 대하여 1회 3시간기준 50,000원과 별도의 냉난방시설사용료 20,000원을, 다목적실(지하 26평)은 1회 3만원과 냉난방시설사용료 15,000원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유사 군립공공 시설의 사용료에 비하여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거창군립 유사시설인 복지회관의 소강당(45평)의 경우 1회 사용료(3시간)가 주간 10,000원, 야간 15,000원으로 하되 3시간 초과시 1시간 3,000원과 토요일.공휴일 20% 가산토록 되어 있으며,

- 문화센터 전시실의 경우 대전시설(41평) 1회(3시간) 사용료가 16,400원, 소전시실(18평) 7,200원과 냉난방실 1회 10,000원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많은 예산의 투입한 시설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6조의 제2항에서 위원위촉과 관련 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군소속 공무원이므로 위촉대상이 아닌 임명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 동 시설도 민간위탁 가능한 시설이므로 향후 민간위탁 가능한 시설이므로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 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 5. 참고자료

##### 군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시 설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한마음도서관 -시청각실(44평) -다목적실(26평)	1회 3시간 1회 3시간	50,000원 30,000원	냉·난방 사용료(별도) - 1회 20,000원, 초과시 시간당 5천원 ※김해시립도서관 1회 5만원, 냉난방3만원
복지회관 소강당 -주간 -야간 -전시용도	1회 3시간 1회 3시간 1일 10시간	10,000원 15,000원 20,000원	3시간 초과 매시간 5,000원 가산 토,일,공휴일은 평일 총 요금의 20% 가산 초과 매시간 마다 5,000원가산
문화센터 -전시실(41평) -소전시실(18평)	1회3시간 1회 3시간	16,400 7,200원	1일 10,000원